

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4. 11.

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

1. 규칙명: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○ 「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개정사항 반영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 자치법규(조례) 오기 사항 정정(안 제1조)

나.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 중 별정직 삭제(안 [별표 1])

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	
		현 행	개 정 안
운영위원회	운영전문위원	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6급 상당	지방행정주사
기획행정위원회	기획행정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 상당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건설위원회	산업건설전문위원	지방행정·농업·시설 사무관	좌동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bcfarc@korea.kr

붙임 1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 조례”를 “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하동군 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 조 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6 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「하동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[별표 1]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
운영위원회	운영전문위원	지방행정주사
기획행정위원회	기획행정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건설위원회	산업건설전문위원	지방행정·농업·시설 사무관